

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PTA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 본회는 ‘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천주교회 PTA’ 라 칭한다.

제 2 조 (주보성인) 본 회의 주보는 성녀 모니카로 한다.

제 3 조 (목 적)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, 배운 것을 실천하며,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부모로서 다양한 영적 / 물질 지원과 참여 봉사를 한다.
- 2항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회원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며, 성 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노력한다.
- 3항 전례의 능동적인 참여와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고, 회원 상호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친교를 이룬다.

제 2 장 조 직

제 4 조 (구 성) 본 회의 회원은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주일학교 학생을 둔 모든 학부모이다.

제 5 조 (회 원)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활동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본 회의 회원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이다.
- 2항 본 회의 투표권은 회원에 한한다.

제 6 조 (임 원) 본 회의 임원은 회장, 부회장, 서기, 회계, 코디네이터 각 1명으로 한다.

제 7 조 (임원선임) 본 회의 임원선임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항 회장 자격은 중학교 이상 자녀를 둔 회원에 한하여 추천한다.
- 3항 회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.
- 4항 부회장, 서기, 회계, 코디네이터 는 회장이 추천한 후 주임신부가 임명한다.
- 5항 본 회의 회장은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 조 (임 기) 본 회의 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한해에 한하여 연임할 수도 있다.

제 9 조 (담당신부) 본 회의 지도신부는 모든 업무를 지도하고,
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무

제 10 조 본 회의 회원은 매일 ‘자녀를 위한 기도’ 를 바친다.

제 11 조 (임 무) 본 회의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항 (회 장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본 회를 총괄 운영한다.
- 2항 (부회장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- 3항 (서 기) 서기는 본 회의 회의록 작성과 제반 서류 작성, 본관 업무를 담당하여, 회원들의 긴밀한 업무 연락을 담당한다.
- 4항 (회 계) 회계는 단체의 모든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행사를 돕는다.
- 5항 (코디네이터) 코디네이터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시 원활한 소통 업무를 담당한다.
- 6항 (회원/ 준회원) PTA의 목적과 회칙을 준수하며, 회의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을 주보 성인과 같은 마음으로 봉사한다.

제 4장 회 의

제 12 조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분기회로 개최한다.

- 1항 (정기총회) 정기총회는 학년말인 5월 중에 개최하고, 회칙개정, 임원선거, 예산 및 결산 보고,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다.
- 2항 (월 례 회) 분기회 1년 3회(12월, 3월, 5월)로 개최한다.
- 3항 (임시총회) 임시총회는 담당신부가 요청할 때,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회원의 2/3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 13 조 (정 족 수) 본 회의 회의는 출석회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,
가부동수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
제5장 재 정

제 14조(회 비) 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

- 1항 연회비는 매년 정기 총회시 학생 1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.

2항 연회비는 PTA의 목적과 정신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.

3항 특별 지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단에서 결정하고 지도신부에게 알리며
선지출 후 회원들에게 공지할 수 있다.

4항 특별 지출 사항의 경우, PTA 회의를 통하여 특별 모금을 의결할 수 있다.

제 15조(경조위문)

1항 회원의 경조시 필요에 따라 봉사로서 도움을 준다.

2항 회원의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 연미사1대를 봉헌한다.

3항 서기가 모든 자모회 회원에게 연락을 취한다.

제16조(회계연도) 본 회의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한다.

2016. 9. 17. 인준.

2017. 8. 22. 1차 개정.

2018. 5. 13. 2차 개정.

